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0-180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0년 11월 13일(금)
- 라. 회부일자: 2020년 11월 13일(금)

2. 제출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보조금 사용에 관한 통제장치의 마련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나.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 금지 등 조항 신설(안 제4조)

4.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안부 예규)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보조금 사용에 따른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먼저,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으로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지원단체로 마포구 체육회와 마포구 장애인 체육회를 명시하고 있는 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단체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있음.
- 또한, 보조금 용도의 제한과 집행방법을 명시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4조를 신설(기존 제4조는 제5조로 이동)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는 물론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보조금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통제 장치 마련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안임.

【참고자료】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2. 3.]

〈행안부 예규 제108호〉

(2) 보조금 지원 대상 (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